

(덧붙임1)

SBA 맞춤형 Kibo-Star밸리기업 지원광고(안) [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]

1 개요

- (목적) 기술보증기금(이하 “기보”)과 서울경제진흥원(이하 “SBA”)의 공동 선별지원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



- (지원 대상) SBA 추천을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중 기보의 Kibo-Star밸리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- (지원 규모) 5개社 이내 (최종 지원기업 수는 단계별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 - 보증지원 가능 금액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·보증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
- 지원 제외대상

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,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ⓐ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(보증금지·제한기업)[참고1]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[참고2] 해당 시 ⓑ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[참고3] 해당 시 ⓒ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·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(신용도유의 기업, 금융부조리 사실이 있는 기업 등) ⓓ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협약서[별첨2]를 제출하지 않고 프로그램 신청한 기업

- 지원 제외대상 여·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,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- 보증기관(기보·신보·보증재단) 이용 중인 기업이 본 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할 경우, 공모 신청 시 '보증관련대출 상환 협약서(별첨2)'를 제출하여야 하며, 추후 최종 선정 시 기존 이용 중인 보증을 전액상환하여야 합니다.

2 | 지원 내용

□ (보증지원) Kibo-Star밸리 기업 선정 및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

구분	Start-up 단계 (Level 1) (창업 후 3년 이내 기업)	Build-up 단계 (Level 2) (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)
사제한도	최대 30억원	최대 50억원
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3억원 이하 산정특례 ■ 사제한도 설정 후 매출실적 등과 연계하여 점진적 지원 ■ 평가료 면제 ■ 0.7% 고정보증료 (혁신스타트업보증 우대사항) ■ 보증비율 100% (혁신스타트업보증 우대사항) ■ Kibo-Star밸리 기업 선정서 교부 	
지원기간	선정일로부터 3년	

□ (비금융연계지원) 선정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연계 프로그램 제공

- (투자지원) 기술보증기금 투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
- (전담코칭) 선정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혁신스타트업팀이 주기적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컨설팅
- (홍보지원) 선정기업, 성공사례 등을 홈페이지, 블로그 게시 등

□ 기술보증기금 Kibo-Star밸리 선정 이후, 서울경제진흥원이 美 주정부와 연계하여 절차에 따라 해외진출을 위한 후속 지원 검토

3 선정 절차

□ 신청접수, 1차 추천심사(SBA), 2차 서면평가, 3차 평가위원단 심의, 최종 기술평가·보증심사를 거쳐 선정

단 계	주요 내용	일 정	수행
온라인 신청·접수	▶ 스타트업 플러스 홈페이지 접수 (https://mplus.startup-plus.kr)	'25.10.14.~ '25.10.28.	S B A
↓			
1차 평가 (추천심사)	▶ 2차 평가 대상기업 추천	10월中	기 보
↓			
2차 평가 (요건검토·서면평가)	▶ 3차 평가 대상기업 선정 *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	10월~11월	
↓			
3차 평가* (평가위원단)	▶ 최종평가 대상기업 선정 *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	11월中	
↓			
최종평가 (기술평가·보증심사)	▶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* Kibo-Star밸리 기업 선정요건 충족여부 확인	11월中	
↓			
최종선정	▶ 최종 선정기업 발표	11월~12월	
↓			
보증지원	▶ 혁신스타트업팀에서 사전한도 설정, 선정서 교부 및 보증서 발급	11월~12월	

* 3차 평가(평가위원단)는 공모 진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 | 평가 기준

- ① (신청접수, 1차평가) SBA가 '스타트업플러스' 플랫폼(www.startup-plus.kr)으로 신청접수 후 내부 추천심사 진행하여 선정기업을 기보에 추천의뢰
- ② (2차 평가) 아래 평가지표에 의해 서면평가

구분	평가지표*	배점
기술 혁신 역량	1. 연구개발 전담조직	10
	2. 연구개발 총괄 책임자 역량	15
	3. 연구개발 투자비율	10
	4. 지식재산권 등 보유현황	15
기술 사업화 가능성	5. 매출액 성장성	15
	6. 영업이익 성장성	20
	7. 고용창출 성장성	15
합 계		100
8. 가점(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10억원 이상(누적) 투자유치)		5
총 점		105

- ③ (3차 평가*)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아래 평가지표 중심의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 등을 활용한 심층 토론방식으로 대상 기업 선정

평가지표	배 점
1. 글로벌 진출 가능성	20
2. 투자유치금액	20
3. 매출규모	10
4. 고용인원	10
5. 공모선정 타당성	40
총 점	100

* 3차 평가(평가위원단)는 공모 진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④ (최종 평가)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통해 지원기업 확정
- Kibo-Star밸리 기업 선정요건 충족 시 한도설정 및 보증서 발급

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

- (신청·접수기간) 2025. 10. 14. (화) ~ 2025. 10. 28. (화) 13시 (기한 엄수)
- (신청방법) SBA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(<https://mplus.startup-plus.kr>) 접수
- (제출서류)

항 목	세부 내용
제출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기술사업계획서[별첨1] ② 보증관련대출 상환 약약서[별첨2] (제출시점 보증이용기업에 한해 제출) ③ 주주명부 (제출시점 발급분) ④ (법인, 개인사업자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⑥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(4개년('21~'24), 해당 시 제출)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(해당 시 rnd.or.kr에서 발급, 기술인력 신고현황 포함) ⑧ 4개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(2021.12.31., 2022.12.31., 2023.12.31.과 2024.12.31.)의 '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'를 발급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"동일하게" 지정하여 연도별 한 부씩 발급 예) 2024년의 명부 발급 시 <검색기준 2024.12.31.~2024.12.31. 자>로 발급 (2021.12.31. 이후 창업기업은 발급가능한 자료만 제출) ⑨ 연구개발 책임자 이력사항, 지식재산권 보유현황, 투자유치내역[별첨3] (별첨3 파일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제출서류와 함께 제출) ⑩ IR 발표자료 혹은 기업설명회 자료 (관련자료 보유 기업에 한해 제출) <p>※ ④, ⑤, ⑦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</p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술평가·보증심사 진행 기업은 현장실사 등 보증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 별도 제출 (추후 안내) •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 분에 한해 인정하고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•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기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보증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실 것

- (의무 이행사항)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□ 문의처

- (접수문의) 서울경제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(02-361-5409, hkkim@sba.seoul.kr)
- (상품문의) 기술보증기금 서울혁신스타트업팀(02-3215-5996, istartup@kibo.or.kr)

참고 : 1.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
2.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3.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. 끝.

< 보증금지기업 >

1.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
2. 제1호의 자가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3.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
 - 가. 4촌 이내의 혈족, 3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(사실혼 관계 포함)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 또는 출자한 자
 - 나.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

< 보증제한기업 >

1. 휴업 중인 기업
2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3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4.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 - 가. 대표자
 - 나. 실제경영자
 - 다. 따로 정하는 "기준"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
6. 파산·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7.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*
 - *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,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
8. "금융부조리 관련 기업"*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.
 - * 보증브로커 개입기업, 허위자료 제출기업, 금품제공기업, 부정청탁기업 등
9. 기금,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(이하 "신보"라 한다) 또는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(이하 "보증재단"이라 한다)의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「보증기업 경영개선지원기준」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)
10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11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- 가.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'보증금지기업'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- 나.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- 다.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- 라.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
 - 마. 기금이 팩토링 부실처리한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기업과 기금이 상환청구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여 팩토링 부실처리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기업
1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 - 가.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'보증금지기업'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나.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(공동경영자 포함)
 - 다. 제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
14. 제12호 기업(마목 제외)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
참고2

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
구 분	세부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	
		10차	11차
도박 게임 관련	·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※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	3340	3340
	·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	46463, 47640	46463, 47640
	· 도박기계 임대업	69390	76390
	·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	75999	75995, 75999
	·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	91113	91113
	· 카지노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	91242, 91249
사치 향락 관련	· 주류 및 담배 중개업	46102	46102
	· 귀금속 중개업	46109	46107
	·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	46331, 47221	46331, 47231, 46333, 47232
	· 귀금속 도소매업	46492, 47830	46492, 47830
	· 주점업	5621	5621
	· 노래연습장 운영업	91223	91223
	· 무도장 운영업	91291	91291
	· 마사지업	96122	96122
부동산 관련	· 주거용 건물 임대업	68111	68111
	·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	68121	68121
	·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, 부동산 투자 자문업	68221, 68222	68221, 68222
기타	·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	59142	59142
	· 전화방	91229	91229
	· 복권 발행 및 판매업	91241	91241
	·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	96992	96992

참고3

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

구 분	세부항목
결격요건 (1개라도 "부"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)	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,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※ 다만,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
	② 실제경영자가(공고일 기준 2년 이내) 금융질서문란,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
	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
	④ 실제경영자(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)가 최근 2년 이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